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- 120호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노후·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시행 구역의 노후도 요건과 가로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요건 완화(안 제3조제1항) 사업시행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·불량건축물 비중을 현행 3분 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)으로 완화 나.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(안 제3조제2항)

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해당 사업 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

3. 의견제출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lit.go.kr) → 정책 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·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현 행	개 정 안	의 견

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
 - 전화번호: 044)201-4944, 4942